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507
----------	-----------

제안연월일 : 2019년 4월 24일

제안자 : 교 육 위 원 장

## 1. 수정이유

- 가. 평화·통일교육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촉위원의 범위에 교육감으로부터의 임명대상인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위촉”이라는 용어를 “임명 또는 위촉”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나. 평화통일교육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당연직 위원으로 담당 국장이 포함된 만큼 그 밖의 위원으로 담당 부서의 장학사를 동일한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교육청 조직의 위계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위원의 범위에서 담당 부서의 장학사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 다. 평화·통일교육의 책임 있는 처리를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의 간사를 담당 장학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내용

- 가.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위원의 “위촉”을 “임명 또는 위촉”으로 함(안 제8조제1항).
- 나.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위원의 대상 중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평화·통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으로 함(안 제8조제1항제2호).

다.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의 간사를 평화·통일교육 담당 장학관으로 함  
(안 제8조제4항).

**3. 참고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제1항의 “위촉”을 “임명 또는 위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장학관 또는 장학사”를 “장학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의 “담당 부서의 담당자”를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원안	수정안
<p><b>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b>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화·통일교육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이 <b>위촉</b>한다.</p> <p>1. (생략)</p> <p>2. 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업무 담당 <b>장학관 또는 장학사</b></p> <p>3. ~ 5. (생략)</p> <p>② ~ ③ (생략)</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평화·통일교육 <b>담당 부서의 담당자</b>로 한다.</p>	<p><b>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b> .....</p> <p>.....</p> <p>.....</p> <p>.....</p> <p>.....<b>임명 또는 위촉</b>.....</p> <p>1. (원안과 같음)</p> <p>2. 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업무 담당 <b>장학관</b></p> <p>3. ~ 5. (원안과 같음)</p> <p>② ~ ③ (원안과 같음)</p> <p>④ .....</p> <p>.....</p> <p>.....<b>담당 장학관</b>.....</p>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의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념을 바탕으로 실시한다.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다문화 교육, 평화 교육,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능력 배양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상호이해와 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8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평화·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목적, 방향
2.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추진 방안
3.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
5.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평화·통일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통일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의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화·통일교육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2. 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3. 통일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평화·통일교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4. 평화·통일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유관 기관 및 단체 대표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평화·통일교육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9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통일교육계획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관련 각종 연수 활성화,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평화·통일교육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 학습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평화·통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또는 학생, 학급, 학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